2023-9호(9. 27.)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재정 정보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근의 입법·재정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 라 북 도 의 회 사 무 처
Jeollabuk-do Provincial Assembly

차 례

【 입 법 분 야 】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

1.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 ····· 1
2.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 4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행정자치위원회

1. 「지방자치법」 ····· 9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0

□ 환경복지위원회

1.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 11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1

□ 농산업경제위원회

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13
2.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 ····· 14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17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8

□ 교육위원회

1.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 ·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1
2.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5

차 례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1.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 ····· 29

Ⅳ. 법령 해석 사례

1. 지방의회의원이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을 근거로 강사의 직이 휴직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 등 관련) ····· 39
2.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등 관련) ····· 42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순창군수가 면 지역에 설치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49
2.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위촉 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또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 중에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관련) ····· 51

차 례

【 재 정 분 야 】

Ⅵ. 재정 동향

1. 디지털세 도입논의 현황과 국내영향(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 ····· 59
2. 글로벌 및 한국 경제동향과 전망(KOTRA 무역투자연구센터) ····· 62
3. 열받은 지구의 역습, 엘니뇨와 에코플레이션(하나금융경영연구소) ····· 66
4. 기초연금 제도 및 수급자 특성 변화 분석(국회예산정책처) ····· 73
5. 대학원 R&D 투자의 해외 동향과 정책과제(한국교육개발원) ····· 79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1. '재난현장 자원봉사 쉼터버스' 도입(경기도) ····· 89
2. 전국 최초로 청년층에 신축아파트 만원에 공급(전라남도) ····· 91
3. 충남 전역 '빛 공해 관리' 나선다(충청남도) ····· 93
4.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 추진(강원특별자치도) ····· 95
5.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공부방 운영(제주특별자치도) ····· 97

Ⅷ.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사례

1. 「국고금 관리법」 상 관서운영비 지출한도 위반 문제(국토교통위) ····· 101
2. 수소차 보급 사업 전 차종 집행 부진 문제 개선 필요(환경노동위) ····· 103
3. 특별교부금 사업과 보통교부금 사업 간 차별화 강화 필요(교육위) ····· 107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1.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 및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등 관련 ····· 113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안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안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

(이영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6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이영해, 김종섭, 이성룡, 안수일, 천미경, 공진혁, 김종훈, 권태호, 문석주, 홍유준, 김수종, 강대길 의원(12명)

1. 제정이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질적인 실현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울산광역시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질적 실현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2. “장려금”이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
3.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등) ① 시장은 장려금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 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울산광역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급중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2. 근로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장려금이 지급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환수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구・군,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송형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6

발의연월일 : 2023. 8. 30.

발 의 자 : 송형곤, 서동욱, 김태균, 전경선, 차영수, 신민호, 최선국, 이 철, 이동현, 신의준, 조옥현, 최명수, 정 철, 신승철, 주종섭, 임형석, 박원종, 서대현, 김성일, 오미화, 김정희, 김회식, 김재철, 김호진, 이재태, 이광일, 류기준, 한숙경, 임지락, 김문수, 이현창, 박문옥, 김인정, 김정이, 손남일, 김주웅, 박선준, 강정일, 정길수, 이규현, 최동익, 정영균, 모정환, 김진남, 박성재, 최무경, 박종원, 박현숙, 장은영, 박형대, 박경미 의원(51명)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폐암검진주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에 대한 지원에 관항 사항(안 제6조)

전라남도 조례 제 호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급식종사자”란 다음 각 호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조리사, 영양사, 조리실무사를 말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기본방향 및 지원내용
2. 지원 대상 및 절차
3. 그 밖에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폐암검진 주기) 폐암검진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폐암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판정된 급식종사자에게는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행정자치위원회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699호, 2023. 9.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도가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 개정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의원”을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6조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도가”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2023.9.14. 시행]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제206조(경비의 부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시·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도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9-12~2023-10-23)

◇ 개정이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안 제15조의2)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된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대한 주요내용인 검토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사항인 절차 ·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함

나.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기준 보완(안 제41조)

지방의회의원 정수가 홀수인 지방의회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2분의 1에 한 명을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이장 및 통장 법적 근거 마련(안 제134조의2)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이 · 통장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 · 통장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함

라. 공공협약제도 도입(안 제164조의2, 제183조의2)

지자체 간, 국가와 지자체 간 소관 사무를 공동으로 협력하여 처리하기 위해 별도 조직 없이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체결하는 공공협약을 도입함

마. 분쟁조정기구 전문성 강화(안 제166조, 제167조, 제187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구성 다양화를 통해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 공정성 제고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시행령」[2023.7.10. 시행]

제11조(자치분권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2023.9.22. 시행]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환경복지위원회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9호, 2023. 9. 14., 제정]

◇ **제정이유**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함.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치수 현황 및 지역 특성,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계획홍수량 등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나.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다. 환경부장관은 물재해 정보의 수집·전파, 도시침수 및 침수피해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라. 환경부장관이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역별로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침수예보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9-08~2023-09-2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은 교원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의 성실 노력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의 실효성이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 있음. 이에 법령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조례·교육 규칙·정관·학교 규칙의 제·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하는 경우 정부의 이행의무를 부과해서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교사의 권리와 학생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이 요구되고 있고,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발표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서, 교원 노동조합이 교육정책에 관해서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들 스스로가 균형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 현장의 합리적인 견해들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제6조).

◇ 개정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및 교육정책”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단체협약의 이행)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조례·교육 규칙·정관·학교 규칙의 제·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개정 또는 편성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1.7.6. 시행]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07호, 2023. 9.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 체결 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개정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제1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으로 한다.

4. 보험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24.3.15. 시행]

제7조(보험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로서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1. 사업방법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6. 10., 2023. 9. 14.>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보험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주영의원 등 14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9-11~2023-09-25)

◇ 제안이유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다핵종제거시설(ALPS) 등 처리수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고, 2022년 7월 22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원전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2023년 8월 24일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함.

일본이 방출하는 130만t 이상의 원전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삼중수소(트리튬)는 현재 과학 기술로 제거할 수 없고, 다른 방사성 물질들이 인체에 해를 주지 않을 만큼 완전히 제거된다는 보장이 없어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30년이라는 장기간 방류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를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 등 국민이 입게 될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임.

이에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

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 어업인 등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피해지역과 피해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원전오염수 실태조사 및 원전오염수로 인한 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피해지역의 어업인등을 지원하고 해양환경의 복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해양방사성물질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로 인한 피해 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전오염수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둠(안 제9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원전오염수 피해지역에 대하여 의료·방역·방제 및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전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 ·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전오염수로 인하여 관할구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카. 정부로 하여금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공급하기 위하여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운용 · 관리 ·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파. 국가로 하여금 피해 어업인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 · 금액 · 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타. 정부로 하여금 원전오염수로 인하여 수산물 등의 품목을 포획 · 채취 ·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피해어업인등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산물 도매시장이 방사능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6조).

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27조).

너. 국가 등은 원전오염수 피해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제정]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 · 예술적 · 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근현대부동산유산과 근현대동산유산으로 구분함(제2조).

나.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 · 제작 ·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부동산유산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인 필수보존요소를 지정 ·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7조).

바.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유산

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사.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자.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관리단체의 선정·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51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9-08~2023-09-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탑승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과 기준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현행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바, 2023년 5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권, 정보 접근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특성·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하여 규격과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폭넓은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41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0항 신설).

◇ 개정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9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특성·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하여 그 규격 및 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3.7.19. 시행]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8.>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2020. 6. 9.>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⑦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⑧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2022. 1. 18.>

⑨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8.>

⑩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육위원회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9-07~2023-09-16)

◇ 제안이유

2001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을 서울 금호초등학교에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226개교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최근 방과 후 교육활동의 내실화와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하여 늘봄학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늘봄학교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학교에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이를 핵심 교육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면책, 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적용대상에 유치원과 대학을 포함하고, 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담당 교직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라.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부터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확산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 **개정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감독기관장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의 장

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의 장

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1)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총장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3)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제5조제1항제1호 중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를 “감독기관장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독기관의 장이”를 “감독기관장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감독기관의 장은”을 “감독기관장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감독기관의 장이”를 각각 “감독기관장등이”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관리하는 자”를 “운영·관리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을 각각 “운영관리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을 “운영관리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0조 중 “감독기관의 장”을 “감독기관장등”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2021.3.25.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나.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 3. 23.>

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신설 2021. 3. 23.>

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3. 23.>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

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④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간의 동선이 분리되는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9-13~2023-09-2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한 학급 규모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학급 규모가 학생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별 교육통계를 기반으로 적정한 학급 규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

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 개정문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 (국회도서관, 제228호, 최서지)

□ 배경

○ 교사가 교육활동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로 인하여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거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은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질서있는 교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학생지도와 교실에서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 2023년 3월, 미국 연방 행정부와 교육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징계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교내 정학 및 퇴학을 결정할 때 연방법에서 규정한 학생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학생의 징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연방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와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제학생의 행동에 대하여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의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모두 교육환경에서 존중되어야 마땅한 권리이다. 미국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주정부의 입법 사례는 우리나라 교육정책 논의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관련 법률: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9096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9094호)

□ 도입

○ 미국의 전통적인 학교 규율방식은 사법체계의 ‘응징적 정의(Punitive Justice)’와 유사한 개념으로, 학교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도 학생들의 정학 또는 퇴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 사항을 통제하기 위한 처벌은 학생의 성별 또는 인종과 같은 특성이 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찰이 학교의 질서체계에 개입하는 경우 학교에서의 징계가 사법적 절차로 연결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학생 스스로 책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기반한 교사의 교육활동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주정부에서도 이를 반영한 교육정책을 성문화하였다.

표 1 학교 내의 처벌에 대한 전통적 접근방식과 회복적 접근방식의 예[3)]

전통적 / 응징적 접근 방식	회복적 접근 방식
어떤 규칙을 어겼는가?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혹은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누가 규칙을 어겼는가?	피해를 입은 사람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이해 당사자는 누구인가?
당사자는 어떻게 처벌받을 것인가?	어떤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고, 어떤 절차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 그러나 80% 이상의 미국 공립학교 교사는 COVID-19 팬데믹이 학생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회복적 정의에 의한 교육정책은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의 비행으로 인한 교실의 혼란, 교사 및 교직원에 대한 무례, 교실 밖에서의 난폭한 행위, 전자기기 사용 금지규정 위반 등의 행동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일부 주정부에서는 안전한 교실에서 공부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다.

□ 연방의 「교사보호법」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

○ 연방정부와 연방법원은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주정부에 위임하여 교육자가 학생의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한 공립학교의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연방 법률인 「교사보호법」에서 교사는 고용의 범위 또는 책임의 범위 내에서 행한 학생 지도에 대하여 고의적 또는 범죄적이거나, 중과실, 무모한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닌 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는다. 이를 통하여 교사가 학교 또는 교실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을 통제하고, 정학 또는 퇴학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다.

○ 연방정부는 「교사보호법」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한 체계가 회복적 정의에 근거해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을 2023년 3월 발표하여 학생의 인권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생 징계 시에 징계 위반을 객관적으로 정의하여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징계절차가 성별이나 장애와 같은 기타 특성에 관계없이 일관되고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공정한 규율 정책 및 관행을 확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육정책 결정에 교육자, 학부모, 보호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함
- 징계 방식은 학생의 필요와 발달 단계를 적절히 고려해야 함
- 학생 징계의 절차 또는 정책은 명확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가정과 학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유대관계를 구축해야 함
- 교사는 학생 또는 가정과 협력하여 관할 주정부 또는 교육구의 징계절차와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함
- 징계 절차와 정책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주정부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정법률

1. 플로리다 주

○ 2023년 5월 9일 플로리다주에서 '교사의 권리장전(Teachers' Bill of Rights)'을 성문화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총 5개의 법안으로 구성된 '교사의 권리장전'은 주 전역의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의 급여를 인상하고, 교실에서 주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교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교권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있다.

○ ‘교사의 권리장전’은 모든 학생들의 학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질서있고 안전한 교실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도한 폭력이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 아닌 한, 교사의 교육활동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교사의 직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근거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으로 기소되면 관할 교육구에서 법적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 현재 주에서 승인한 교사 준비 프로그램(Florida’s teacher preparation program)에 등록되어 있는 지원자에게 임시교사 인증 자격을 부여한다.
  · 임시교사 자격증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 교사 준비 프로그램에서 인증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최소화한다.

○ 또한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사에게 교실을 통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한다.

- ■ 교실 내 행동규칙을 정한다.
- ■ 교실 내 행동규칙을 위반한 경우 개선을 위한 절차를 시행한다.
- ■ 반항적이거나 무례하거나 폭력적이거나 통제할 수 없는 학생을 교실에서 퇴실시킬 수 있다.
- ■ 통제 불가능한 학생을 학교 또는 학군 교육위원회의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등하교를 위한 스쿨버스를 포함하여 교내에서 학교의 규칙을 따르도록 한다.
- ■ 학생을 통제할 수 없거나 징계 절차와 정책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 교육위원회에서 채택한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무력[1]을 사용할 수 있다.

2. 네바다주

○ 기존의 네바다주 「교육법」에서는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법률을 규정하여 학생의 행동을 개선하고, 학생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학교에서 학생을 처벌하지 않는 개입 방식을 규정하였다. 즉, 교사가 퇴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를 반드시 만나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교칙위반 사실이 인정된 학생은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퇴학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교칙을 위반한 경우라도 11세 미만 학생의 정학 또는 퇴학은 금지되었다.

○ 그러나 2022년 4월 교사를 구타한 16세 학생이 무기를 사용한 살인미수로 기소된 사건을 계기로 개인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2023년 6월 개정된 법률은 기존의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규정을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1세 미만의 학생을 정학 또는 퇴학시킬 수 있다.
- 교칙을 위반한 학생은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행동계획을 별도로 이행하지 않고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퇴학시킬 수 있다.
- 규제 약물을 판매하거나 교직원에게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은 11세 미만인 경우에도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1세 이상인 경우 영구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인 경우 해당 교육구의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명한 자가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학교 또는 스쿨버스에서 총기를 소지한 학생이 11세 이상인 경우 정학, 퇴학 또는 영구퇴학[2] 될 수 있으며, 8세에서 11세 미만인 경우 정학 또는 퇴학 처리된다. 6세 이상 8세 미만인 경우에는 정학될 수 있으며, 6세 미만인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명한 자에 따라 정학을 결정할 수 있다.

3. 웨스트버지니아주

○ 2023년 3월 통과된 법안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교사의 권한을 규정한다. 동 법안은 문제가 되는 학생을 분리시키거나 대안학습센터[3]로 보내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법부의 판단하에, 문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더 많은 대안학습센터를 만들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한다.

○ 6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학생이 교실에서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다.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4].

- 교사나 학생을 위협하거나 위협하려는 시도를 하는 학생
- 교사에게 고의로 불복종하는 학생
- 교사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학생
- 그 외에 어떤 식으로든 질서있는 교육환경을 방해하는 학생

○ 문제학생을 퇴실 조치한 교사는 24시간 내에 전자기록을 작성하여 교육정보시스템에 제출하고, 해당 사안을 교장과 논의해야 한다. 교장이 징계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해당 조

치에 대하여 통지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3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 교장은 정학 처분 또는 대안학습센터로의 이동을 결정할 수 있다.

4. 켄터기주

❍ 2023년 3월 통과된 법안에서는 교사, 교직원 및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문제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지역교육위원회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0일의 기간 내에 같은 교실에서 3번 이상 퇴출된 학생을 지속적인 비행으로 간주하여 정학처분을 내릴 수 있다.
- 학년 중 언제든지 교실에서 제외된 학생에 대하여 교장은 교사와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 양육권을 가진 다른 사람과 함께 징계문제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학생을 통제한다.
- 교장은 학생의 반복적인 교실 이동이 다른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년 중 언제든지 학생을 교실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다.
- 학생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교실에서 제외되는 경우, 교장은 해당 학교의 다른 교실, 교육감이 승인한 가상 또는 대체 프로그램으로 이동시켜 교실로 복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5. 기타 발의 법안

❍ 현행 텍사스 주법에 따르면 교사의 언행을 반복적으로,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은 수업에서 퇴실시킬 수 있다. 그러나 2023년 4월 발의된 법안에서 반복적이고 심각함의 요건을 삭제하여 한 번의 수업방해 행위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의 징계가 가능한 비행행위에 교사에 대한 행위를 포함하여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 노스캐롤라이나주법의 경우에, 학생 행동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장기 정학 및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어서, 기존에는 부적절하거나 무례한 언어, 복장규정 위반, 무기를 소지하지 않거나 부상이 없는 싸움은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2023년 2월 발의된 법안에서는 이와 같은 징계의 예외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사소한 교칙의 위반에까지 징계의 범위를 넓혔다.

□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는 초·중등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 규정[5]에 따라 전학 이상의 처분이 어렵다. 반면에 교사의 경우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신고가 접수된 교사는 스스로 무죄를 소명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며, 이러한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교사로 하여금 교육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 미국은 연방정부의 학생 인권을 고려한 교육정책에 대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에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되고 있다. 최근 개정되고 발의된 법안은 이전에 제정된 학생에 대한 규칙이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교사에게 안전한 교실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즉, 교칙위반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교육자에게 학교의 질서를 위반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있다. 나아가 교실에서 퇴출된 학생에게 별도의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성장을 도모한다. 또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형사상 소송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한다.

○ 미국에서는 입법자들이 안전하고 질서있는 교실을 유지하기 위한 교사의 권리와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며, 미국에서 제정 또는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우리나라 입법과정 및 정책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

1) 교육위원회는 안전한 학습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직원이 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여 학교에 배포해야 한다.
2) 영구퇴학이란 현재 재학중인 학군내의 학교로 전학갈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대안교육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해당 교육구 외의 공립학교로 전학해야 함을 의미한다.
3) 대안학습센터란 교육구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학교와 별도로 운영되며 센터에 따라 온라인 학습과정 또는 자체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4) 학생을 통제하는 권한은 통학을 담당하는 스쿨버스 기사에게도 부여한다.
5)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Ⅳ. 법령 해석 사례

Ⅳ 법령 해석 사례

1. 지방의회의원이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을 근거로 강사의 직이 휴직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3-0378, 2023. 8. 28.,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사무국]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각주: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그 강사의 직(職)이 휴직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직이 휴직됩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라 함)’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정당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강사는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강사’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임기의 개시와 동시에 강사의 직은 휴직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가 그 임기 개시 후에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된 경우’에도 같은 항에 따라 그 강사의 직이 휴직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 및 직무전념성을 보장하고 지방공사 등 특정 집단의 경제적·행정적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각주: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마605 결정례 참조)에서 지방의회의원이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제1호),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제5호),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제7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에 취임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지방자치법」 제90조제1호)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서는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의 직 취득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그의 전문성을 의회 운영 등에 활용하는 측면에서(각주: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마605 결정례 참조) 지방의회의원이 그 임기 중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허용하되, 휴직을 통해 교원으로서의 직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인바, 해당 규정은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직 취득 시점과 ‘지방의회의원’ 당선 시점의 선후와 관계없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동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과 해당 교원의 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 및 다른 규정과의 체계에 비추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제도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0호로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을 종전의 ‘명예직’에서 월정수당 등 직무활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으로 전환한 후, 해당 제도 개편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전념을 유도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각주: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과 같이 교원 겸직 시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는 규정을 신설(각주: 2022. 1. 13. 법률 제1789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2항에서 제43조제2항으로 이동하여 현행과 같이 규정됨.)하였는바, 사립학교의 강사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전념을 위해 그 임기 동안에는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직이 휴직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 및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가 교원으로 재직 중에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임기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사립학교의 강사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휴직을 통해 강사 직무의 수행이 제한되는 것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직이 휴직됩니다.

2.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등 관련)

[법제처 23-0714, 2023. 9. 12., 민원인]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에서는 지방공사(각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3조는 준용 대상 조문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로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① 지방공사 또는 ② 지방공단(각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함)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같은 영 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 금지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제33조가 포함되는지?(각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지방계약법 제33조 외 다른 규정의 적용 문제는 별론으로 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계약법 제33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준용 대상 조문으로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를 열거하고 있지 않은 한편, 같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공사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와 함께 같은 법 제33조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입법기술로서 준용 규정을 명시적으로 둔 경우에만 준용이 가능하다 할 것(각주: 법제처 2021. 5. 21. 회신 21-0049 해석례 참조)이고, 특정 법령에서 준용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8. 10. 1. 회신 18-0461 해석례 참조)인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는 준용 대상 조문을 열거하면서도 지방계약법 제33조는 준용 대상 규정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외에 지방공기업법령에서 지방공사등이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바, 지방공기업법령의 문언 및 준용이라는 입법기술의 특성상 지방공사등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3조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인데, 지방계약법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규정(각주: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7070 판결례 참조)이고, 같은 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는 점(각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 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며(지방계약법 제31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2항), 대법원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제재적 행정처분의 하나로 보고 있음(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7070 판결례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공사등과 체결하는 계약에까지 명시적인 준용 규정도 없이 같은 법 제33조가 준용된다고 보아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사등의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지방계약법령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각주: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은 2020. 6. 2. 대통령령 제30729호로 같은 영이 일부개정되면서 제57조의4에서 이동한 규정임.)은 2020년 6월 2일 대통령령 제30729호로 같은 영을 일부개정하면서 지방계약법령의 체계가 변경된 부분 및 조문이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고 준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비된 바 있는데, 해당 개정 과정을 통해서도 지방계약법 제33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준용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와 관련된 규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2는 준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각주: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4제1항에서는 지방공사등에 준용되는 규정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부터 제97조를 포함시키고 있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9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

조의4제1항에 따른 준용 대상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2가 포함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20. 6.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같은 영 제57조의8제1항에 따른 준용 대상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등으로 규정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2를 준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된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중 하나로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를 규정한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8호도 준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지방공사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8호가 준용되는 동시에 그 전제가 되는 같은 법 제33조도 함께 준용된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계약법 제31조를 준용하고 있는 것인바, 지방공사등의 사장 또는 이사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지에 대한 개별·구체적인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방공사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 같은 법 제33조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그와는 별개의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3조까지도 준용된다고 보는 것은 “준용”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계약법 제33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지방공사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준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준용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순창군수가 면 지역에 설치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의견23-0255, 2023. 8. 29., 전라북도 순창군]

【질의요지】

순창군수가 면 지역에 설치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창군수가 면 지역에 설치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이하 “의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순창군의 소관 사무인지 살펴보면,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바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순창군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는 순창군의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순창군수가 면 지역에 설치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각주: 법제처 2022. 12. 8. 의견제시 22-0324 참조),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면 지역에 설치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순창군수가 면 지역에 설치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에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위촉 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또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 중에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관련)

[법제처, 의견23-0146, 2023. 8. 29., 경기도교육청]

【질의요지】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위촉 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또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 중에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위촉 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또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 중에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교육감조례"라 한다) 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경기도 교육·학예 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소청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경기도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로(제2조), 경기도교육감이 위촉하고(제3조제1항),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경우 교육·학예

관련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제4조제1항), 소송사건을 수임할 경우 같은 조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받고(제6조제1항), 그 외에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월 5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제7조제1항).

경기도교육감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교육·학예 관련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련 자문에 응하게 하는 등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1조에서는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법률에 따른 별도의 위임이 있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위촉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위촉 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또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이하 "경기지방변호사회"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 중에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더라도, **경기지방변호사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와 경기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아닌 변호사를 다르게 취급하려면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결정례 참조).**

그런데 경기지방변호사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에 법률사무소를 두고 있을 뿐 경기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아닌 변호사보다 지역 교육·행정업무에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경기도교육감조례 제5조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제1항제3호) 등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중요소송의 경우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경기지방변호사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와 경**

기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아닌 변호사를 달리 취급하여 경기지방변호사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만을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위촉 시 경기지방변호사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 중에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재 정 분 야 】

Ⅵ. 재정 동향

Ⅵ 재정동향

1. 디지털세 도입논의 현황과 국내영향

–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2023. 9.)–

□ 배경

○ 디지털서비스업 영위 다국적 기업들이 기존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거나 본사를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조세 사각지대 발생

* 기존 조세제도가 고정사업장 소재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한 반면,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물리적 사업장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여 매출 발생국이 아닌, 서버·본사가 소재한 국가에 납세

** 구글 등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17%), 아일랜드(12.5%), 버뮤다(0%) 등 나라를 활용

◆ '22년 구글이 한국에 낸 법인세도 네이버의 1/50 수준인 170억원(매출은 3,449억원)으로 이는 가장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되는 앱마켓 매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 구글코리아는 앱마켓 사업 매출이 싱가포르법인에 귀속된다고 주장
※ 실제 한국 내 총매출은 약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국미디어경영학회, 2018)

□ 도입 현황

○ (OECD) G20과 포괄적 이행체계(IF)*를 구축, 국제기준을 마련하여 '24년부터 순차 발효

* 조세회피 방지에 관심있는 국가들이 G20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협의체(Inclusive Framework)

- 최근 발표한('23.7월) 디지털세 성명문은 143개 참여국 中 138개 국가가 승인하는 등 디지털세 체계가 완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23.7월, 기재부)

○ (개별국) 프랑스('19) 등 일부 유럽국가*가 이미 디지털세를 도입하였으나, 미국과 분쟁**으로 OECD차원의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까지 기존 세제를 유지키로 합의

*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인도, 영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 미국은 각국이 도입한 디지털세가 자국기업(구글,애플 등)에 차별적이라며 보복관세 부과 천명

□ 주요 내용

○ 통합접근법(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의 2가지 사항으로 구성

- (필라1: 통합접근법)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과세권을 부여 하고, 대상기업*의 초과이익을 매출 발생국에 배분**

*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이익률 10%이상 기업, 시행후 7년 경과부터는 연결매출액 기준 100억 유로 이상

** 통상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매출발생국에 나누어 납부

-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세율(15%)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시, 그 차이에 대해 모기업 소재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 연결매출액 기준 7.5억 유로 이상 기업 대상

□ 국내 영향

○ (세부담 증가) 매출액 및 이익률 산정에 따라 디지털기업 뿐 아니라, 제조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해당되어 납부세액 증가 예상(금융업·채굴업만 제외)

* 매출액 2,110억 유로(302조원), 영업이익률 14.4% ** 매출액 312억 유로(44.6조원), 영업이익률 15.7%

- 해당 기업들은 글로벌 생산·판매망 구축을 위한 해외진출 시 법인세율 차이를 활용한 비용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 (비용전가) 디지털세 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어 소비자 부담 증가 예상

-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서비스의 경우 증가한 세부담을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상쇄할 가능성 높음

※ 애플은 칠레, 멕시코, 터키 등에서 세금인상을 이유로 해당 국가 내 앱 구매가를 인상한 전례 有('20.9월)

'돈 버는 곳에 세금 낸다'는 대원칙에 세계 각국이 합의하면서, 지난 100년간 유지된 국제조세 원칙에 대전환이 일어난 것으로 평가
(現조세체계는 1920년대 국제연맹체제下 성립)

→ 글로벌 조세정책의 변화는 해외진출·국제교역 규모가 큰 한국 기업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참 고

■ 디지털세 주요 내용

구분	규칙명	주요 내용	발효
통합 접근법 (Pillar1)	Amount A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	'25년
	Amount B	국제거래시 기존 **이전가격의 산출 방식을 표준화·단순화**	'25년
글로벌 최저한세 (Pillar2)	GloBE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해 **특정 국가가 최저한세(15%)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서 추가 과세**	-
	소득산입규칙[1]	**최종 모기업**이 외국 자회사의 저세율 과세에 대한 추가 세액 부담	'24년
	소득산입 보완규칙[2]	**최종 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이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자회사가 소재국에 추가 세액 부담**	'24년
	원천지국과세규칙 (일부 개발도상국限)	원천지국에서 거주지국으로 지급한 금액(이자, 사용료 등)이 **거주지국에서 9% 미만 과세되는 경우, 원천지국에서 추가 과세**	협의 단계

1) 이와 관련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되어 2024.1.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

2) 우리나라는 당초 '24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EU·영국·일본 등 주요국의 도입 시기('25년)를 고려해 1년 연기
(우리나라가 먼저 도입하여 국내 진출 외국기업에 과세할 경우 국내 투자 환경 악화 우려)

2. 글로벌 및 한국 경제동향과 전망

-KOTRA 무역투자연구센터(2023. 9.)-

1. 글로벌 경제동향과 전망

□ [경제성장] 중국 회복 지연 속 미국 경기 개선으로 완만한 성장 전망

○ 중국의 부동산시장 부진이 계속되며 글로벌 경기 하강 압력이 증대되었으나, 미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확대되며 세계 경제는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분석

- 다만,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및 주요국의 통화긴축 장기화 가능성 등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

○ 국제통화기금(IMF),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기후변화 그리고 무역 분절화를 세계 경제성장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진단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전년 대비, %, %p) >

	2022년	2023년	2024년
한국은행('23.8월)	3.4(+0.2)	2.7(+0.2)	2.8(-)
IMF('23.7월)	3.5(+0.1)	3.0(+0.2)	3.0(-)
OECD('23.6월)	3.3(-)	2.7(+0.1)	2.9(-)
World Bank('23.6월)	3.1(+0.2)	2.1(+0.4)	2.4(-0.3)
UN('23.5월)	3.1(+0.1)	2.3(+0.4)	2.5(-0.2)
WTO('23.4월)	3.0(+0.2)	2.4(+0.1)	2.6(-)
IB 평균('23.7월)	3.4(-)	2.8(-)	2.6(-)

* 괄호 안은 직전 전망치 대비 조정폭, IB는 시티, 골드만삭스 등 9개사

□ [교역] 미·중 기술갈등 심화 및 기상악화로 인한 교역 둔화 계속

○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인도*의 쌀 수출제한 강화 및 설탕 수출 전면 금지 방침(10월부) 발표로 글로벌 식량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 설탕 생산량 세계 1위 및 쌀 생산량 세계 2위

○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기업의 중국 AI・첨단반도체・양자컴퓨터 관련 업체에 대한 투자 제한

< 세계 교역성장률 전망(전년 대비, %, %p) >

	2023년	2024년
한국은행('23.8월)	1.7(-0.4)	3.5(-0.1)
IMF('23.7월)	2.0(-0.4)	3.7(+0.2)
World Bank('23.6월)	1.7(+0.1)	2.8(-0.6)
OECD('23.6월)	1.6(-1.3)	3.8(-)
한국수출입은행('23.6월)	2.4	3.5
UN('23.5월)	2.3(+2.7)	3.6(+1.1)
WTO('23.4월)	1.7(+0.7)	3.2(-)

* 괄호 안은 직전 전망치 대비 조정폭

□ [유가] 미 경기 개선 기대와 OPEC+의 공급 감축으로 상승세

* 8.31일 기준 배럴당 두바이유 87.53달러(전월 대비 +2.21%), WTI 83.63달러(+2.24%), 브렌트유 86.86달러(+1.52%)

○ 미국의 경기 연착륙 기대와 OPEC+의 원유감산 및 수출 축소가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

○ 다만, 美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 및 중국의 경기부진 지속 우려는 유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

< 유가 전망(달러/배럴)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1Q	2Q	3Q	4Q		
WTI	94.91	75.96(-)	73.49(-)	79.07(+5.75)	82.65(+7.68)	77.79(+3.36)	81.48(+2.97)
브렌트	100.94	81.04(-)	78.02(-)	83.77(+5.45)	87.65(+7.68)	82.62(+3.28)	86.48(+2.97)

* 자료원: 美에너지정보청
** 괄호 안은 '23.7월 전망치 대비 8월 조정폭

□ [물가]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 속 고물가 지속

○ 미국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2% 상승하며 전월(3.0%) 대비 소폭 증가
* ('22.6월) 9.1% (9월) 8.2% (12월) 6.5% ('23.1월) 6.4% (3월) 5.0% (5월) 4.0%

○ 같은 기간, 영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8%로, '22.2월 이후 최저치

○ 같은 기간,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로, 전월 대비 보합

○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3%로 전월 대비 보합

□ [금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통화긴축 지속 가능성

○ 美 연준 파월 의장, 잭슨홀* 미팅에서 경제지표에 기반한 추가 금리인상 여지 시사

* 매년 8월 말 미국 휴양지 잭슨홀에서 美 연준 주도하에 개최되는 연례 경제정책

○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시사

○ 러시아(8.50%→12.00%)를 포함한 다수의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단행

* (노르웨이) 3.75%→4.00%, (튀르키예) 17.50%→25.00%

○ 한편, 일본은행은 초완화적 통화정책 방침

□ [환율]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지속 기대로 강달러 계속

○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1,343원까지 상승(8.17일)

○ 엔/달러 환율 역시 미국의 통화긴축 지속 기대로 146엔까지 상승(8.28일)

< 주요 투자은행의 환율 전망 >

	유로화 (1.0796)***				엔화 (146.44)*				위안화 (7.2873)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IB 평균*	1.0913	1.1067	1.1143	1.1300	140.22	138.44	133.71	132.13	7.2311	7.1222	6.9814	6.9138
변동폭**	+1.1%	+2.5%	+3.2%	+4.7%	+4.4%	+5.8%	+9.5%	+10.8%	+0.8%	+2.3%	+4.4%	+5.4%

자료원: 국제금융센터(8/28일 기준) *최고/최저 제외 **변동폭은 전월 대비 절상 또는 절하폭 ***1유로당 달러(엔, 위안은 1달러당 해당통화)

2. 한국 경제동향과 전망

□ [경제성장] 수출둔화 속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며 경제심리 부진 계속

○ 중국의 회복세가 약화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이 계속되며 경기둔화 지속

○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4%로, 3개월 만에 3%대로 반등

* ('22.6월) 6.0% (9월) 5.6% (12월) 5.0% ('23.3월) 4.2% (7월) 2.3%

- 같은 기간,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1로, 전월 대비 0.1p 하락(한국은행)

*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로, 100보다 크면 과거('03년~전년 12월)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 같은 기간, 全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1로, 전월 대비 3.0p 하락(한국은행)

* 경기 동향에 대한 기업들의 판단, 예측, 계획을 종합하여 나타내는 지수로, 100보다 크면 전기 대비 호전, 작으면 악화를 의미

- 제조업 BSI는 67로, 전월 대비 5.0p 하락. 한국은행의 7월 조사에 따르면,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19.1%, -4.4%p), 내수부진(16.8%,+0.7%p), 수출부진(16.2%, +3.8%p), 원자재 가격상승(8.4%, +0.7%p) 등이 꼽힘

<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전년 대비, %, %p) >

	2023년	2024년
한국개발연구원('23.8월)	1.5(-)	2.3(-)
한국은행('23.8월)	1.4(-)	2.2(-0.1)
IMF('23.7월)	1.4(-0.1)	2.4(-)
ADB('23.7월)	1.3(-0.2)	2.2(-)
기재부('23.7월)	1.4(-0.2)	2.4
OECD('23.6월)	1.5(-0.1)	2.1(-0.2)
산업연구원('23.5월)	1.4(-0.5)	(-)
UN('23.1월)	2.0(-2.5)	2.5

* 괄호 안은 직전 전망치 대비 조정폭

□ [교역] 8월 수출은 전년 대비 8.4% 감소한 518.7억 달러, 수입은 510.0억 달러(-22.8%), 무역수지는 8.7억 달러 흑자 기록

○ 수출은 반도체 및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단가 하락, 작년 역대 8월 중 최고실적(566.0억 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감소

- 자동차·차부품·일반기계·선박·디스플레이·가전 등 수출은 증가한 반면, 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철강 등은 전년 대비 하락한 단가 영향으로 감소

< 8월 15대 품목별 수출 실적(억 달러, 전년 대비 %) >

구 분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철 강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차부품
수출액	85.6	38.8	41.0	52.9	28.6	42.9	19.1	19.1
증감률	-20.6	-12.0	+7.7	+28.7	-11.2	-35.3	+4.1	+5.9
구 분	바이오헬스	무선통신	컴퓨터	섬 유	선 박	가 전	이차전지	전 체
수출액	9.2	12.2	5.2	8.3	16.1	6.5	7.4	518.7
증감률	-25.1	-7.8	-54.6	-10.9	+35.2	+12.3	-21.3	-8.4

*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對美·EU·중동 수출은 자동차와 일반기계의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플러스 전환. 특히 미국·EU로의 수출은 역대 8월 실적 중 1위를 기록
- IT 업황 부진 등으로 인한 중국·아세안의 對세계 수출 부진이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감소로 연결되며 對중국·아세안 수출은 감소

○ 수입은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줄어들고 반도체·반도체장비·철강 등의 수입이 줄어들며 감소세 지속

3. 열받은 지구의 역습, 엘니뇨와 에코플레이션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3. 8.)-

Ⅰ. 지구 열대화의 시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는 지구

□ 기록적인 이상기후의 빈발로 전 세계 재난 피해가 속출

○ 안토니오 구테흐스 UN사무총장,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가 끝나고 끓어오르는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도래했음을 경고

○ EU 기후변화 감시기구(C3S)는 2023년 7월 지표면 평균기온이 16.95℃를 기록해 관측이 시작된 1940년 이후 역대 월별 기록 가운데 가장 높았음을 확인

- 특히, 올 7월 초는 일별 세계평균기온이 17℃ 선을 상회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최소 10만 년 이내에는 없었던 고온현상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우드웰 기후연구센터)
-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2027년 지표면 온도가 파리기후협약(2018) 당시의 방어 목표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상회할 가능성이 66%로 예상

○ 올해 다수의 국가에서 기록적인 폭염, 폭우, 가뭄, 산불 등 기상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대규모 피해 사례가 속출

- 인도에서는 45년 만의 기록적 폭우와 산사태 피해로 인해 600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 북미 가뭄 여파로 캐나다에 산불 피해가 이어지며 한국 국토 면적 이상의 산림 소실
-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7월 16일 기온이 52.2℃를 기록, 역대 중국 최고 기온 경신
- 계절 상 8월이 겨울에 해당하는 남반구에서도 30℃를 웃도는 겨울철 이상고온 기록 중

□ 최근 발생한 엘니뇨 현상이 이상기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

○ 엘니뇨란 무역풍의 약화로 적도태평양 부근의 용승 현상(심해 차가운 물이 상승하는 현상)이 줄어들게 되면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는 현상

- 美 해양대기청(NOAA)은 엘니뇨 감시 구역(Nino 3.4)의 3개월 평균 수온이 평년 대비 +0.5℃ 이상인 상태가 5개월 연속 유지되면 엘니뇨로 판단(-0.5℃ 이하는 라니냐)

○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 7월 4일에 엘니뇨의 발생을 공식 선언하고, 올 하반기 내내 엘니뇨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96%로 전망

- 또한, 23.11월 ~ 24.1월 중에는 해수면 평균 온도가 평년 대비 +1.5℃ 이상으로 상승하는 '슈퍼급 엘니뇨'로 발전될 가능성도 절반 이상(56%)인 것으로 예상

○ 엘니뇨 현상은 전 지구적인 기후 영향력을 행사하며, 각 지역별로 평년과 상이한 기상여건을 형성해 극단적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를 높이는 경향

- 엘니뇨 자체는 라니냐와 번갈아 가며 2~7년 주기로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계속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맞물리며 기상재난 피해 수준이 심화

- 기후 관련 재해에 의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1980년 424억 달러(3건)에서 2021년 1,526억 달러(20건)로 40여 년간 3.6배 이상 증가 (NOAA)

○ 특히, 최근에는 고물가 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에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증대

- 에코플레이션은 Ecology와 Inflation의 합성어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을 의미

Ⅱ. 이상기후로 인한 에코플레이션 위험 증대

1. 농산물 작황 악화에 따른 글로벌 식료품 가격 불안

□ 세계 곡물 생산지의 농업 기상 악화로 농산물 작황에 부정적 영향

○ 설탕 총 생산의 18%를 차지하는 인도의 기상이변(사탕수수 성장기 강우량 부족, 수확기에는 폭우) 피해가 국제 원당 공급 불안정을 야기

- 하반기 엘니뇨가 강화될 경우 ′23/′24년 인도의 원당 수출 규모는 500만톤대(′22/′23년 610만톤)로 감소할 가능성(JP Morgan)

○ 옥수수·대두 산지인 美 중서부 가뭄 비율은 7.25일 기준 88%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캔자스 등 주요 겨울밀 산지 또한 50%가 가뭄 영향권

- 7.16일 기준 美 옥수수와 대두의 상급 품질 비율은 각각 57%, 55%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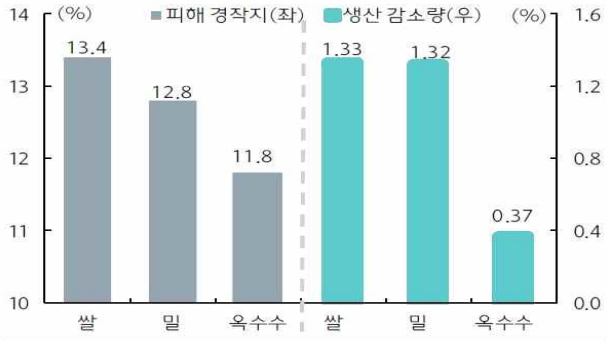
가뭄 영향으로 인해 예년 평균인 65.6%, 62.4%를 큰 폭 하회

○ 캐나다 소맥 주산지인 앨버타와 서스캐처원의 가뭄 및 이상 건조 비율이 각각 89%, 79%를 기록하며 곡물 수확량 및 품질이 과거 평균 대비 큰 폭 저하

○ 유럽 또한 EU 회원국의 40%가 건조 경보 상태이며, 유럽의 최대 소맥 수출국인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북부 지역까지 가뭄으로 인한 토양 수분 부족 현상이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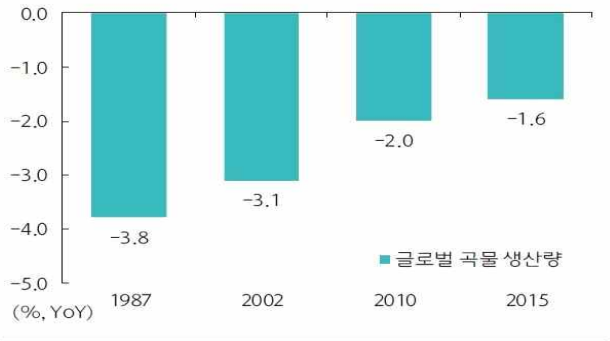
○ 대표적 쌀 생산지인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의 막대한 홍수 피해로 전 세계 쌀 공급 부족 위험 증대

그림4 | 엘니뇨 발생이 주요 곡물 작황에 미치는 피해



자료 : Cao et al (2023)

그림5 | 엘니뇨 발생 시기별 글로벌 곡물 생산 감소율



자료 :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 곡물의 생산 차질은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애그플레이션을 유발

○ 1) 곡물 수급 불균형 : 기상피해 발생 시 주요 수출국의 공급량은 감소하는 반면, 수입국의 소비수요 및 향후 식량 공급 차질에 대비한 재고 비축 수요는 증가

- 특히, 국제 곡물 시장은 소수의 수출국이 전체 교역량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독과점 시장인 만큼 주요 농업국의 생산량 변화는 곡물 가격에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

○ 2) 투기적 자본의 유입 : 곡물가 변동의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자본이 몰리게 되며, 이로 인해 곡물 가격 변동성이 더욱 심화

- 2008년 발생한 곡물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투기적 자본의 유입이 지목(CBOT 옥수수 비상업거래 순매수 포지션은 2005년 초 대비 2008년 초 6~8배 증가)

○ 3) 기타 식료품 물가로의 전이 : 식량자원의 특성(기초 식재료 및 원료)상 식량 가격 상승은 가공식품 및 외식물가 상승 등 2차·3차 파급효과도 초래

- 아울러 대표적인 사료 원료인 옥수수·대두의 가격 상승은 사료 가격에도 영향을 주어 육류 등 축산품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
- 더욱이 국제식량가격의 국내 물가로의 파급시차(한국의 경우 약 10개월 이후 영향)를 감안할 때, 부정적 영향의 장기화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

○ 4) 기대 인플레이션 자극 : 식량가격의 경우에는 체감물가나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불안 및 인플레이션 악순환 발생 우려

2.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방 위험 확대

□ 이상기후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초래

○ 전 세계에 발생한 기록적 폭염으로 냉방 발전용 전력 수요가 급증

- 美 텍사스 지역은 6월 발전용 가스 소비가 과거 3년 평균 대비 약 20% 증가, 유럽의 6월 전력 냉방도일(CDD)은 10년 평균 대비 66일 상승, 중국 및 동아시아는 55일 상승
- 에어컨 보급률이 낮기로 유명한 유럽 또한 폭염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매년 에어컨 판매량이 급성장(IEA 추정 유럽 에어컨 보급률 : 2000년 10% → 2022년 19%)

○ 가뭄으로 인한 수력 발전량 감소가 화석연료의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

- 엘니뇨는 수력 발전 비중이 높은 중국(양쯔강), 브라질(아마존강), 캐나다(매켄지강), 미국(미시시피강) 등의 국가에 건조한 기후를 형성함으로써 댐 저수량 감소를 유발
- 댐을 통한 수력 발전이 어려워짐에 따라 천연가스 등 대체 발전원의 수요 증가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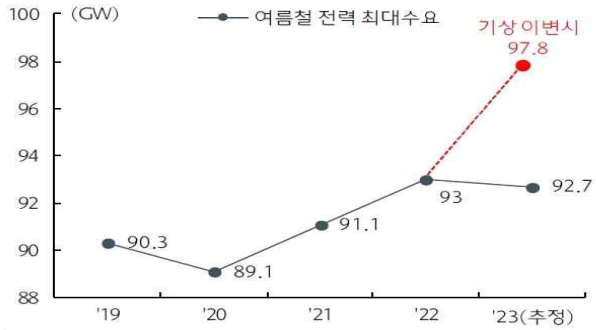
○ 바이오 연료 수급 악화에 따른 화석연료의 대체 수요 증가 가능성도 잠재

- 교토의정서 공식 발효(2005) 이후, 세계 각국이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연료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자 노력함에 따라, 바이오에탄올 생산용 옥수수·바이오 디젤용 대두 등 바이오 연료용

곡물 소비도 빠르게 증가

- 이상기후 피해로 국제 곡물 가격 급등 시 바이오 연료의 수급 불안정성 또한 확대되며 대체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화석연료 수요가 추가로 증가할 소지

그림8 | 최근 5년간 국내 여름철 전력 최대수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6월)

표2 | 엘니뇨 영향권인 바이오 연료(에탄올) 주요 생산국

국가	순위	비중	주요 원료
미국	1	46.7%	옥수수
브라질	2	26.3%	사탕수수, 옥수수
중국	3	8.4%	옥수수, 카사바
EU	4	4.9%	사탕무, 밀, 옥수수
인도	5	2.9%	사탕수수, 당밀 등

자료 :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2-2031

○ 반면 기상이변 영향으로 주요 에너지 공급시설의 가동률 및 생산능력은 악화

- 높은 기온은 정유공장의 냉각 능력 저하로 이어져 원유 처리량을 감소시키며, 화석연료 생산과정에서는 물 사용량이 상당해 가뭄 발생에도 취약
- 올해 5월 이후 미국 정유공장 4곳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정전 및 유지보수 필요성으로 가동을 멈춘 시설 또한 7곳에 육박해 이례적으로 많은 고장 사례 발생

3. 주요 산업용 광물의 공급 불확실성 증대

□ 비철금속 주요 생산지의 이상기후로 산업용 광물 생산에도 차질이 우려

○ 비철금속은 철광석에 비해 매장량이 적고 특정 지역 및 국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주요 채굴 국가들이 엘니뇨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분포

- 특히 전 세계 구리 채굴량의 38% 가량이 밀집된 중남미의 칠레·페루는 적도 태평양 인근에 위치함에 따라 엘니뇨 발생 시 폭염 및 호우 피해 가능성 높음
- 올해 6월 중 칠레(세계 1위 구리 생산국)는 1993년 이후 최대 규모의 홍수가 발생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주요 광산 가동이 중단되고 채굴 작업에 차질 발생

○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또한 가뭄 피해로 인해 제련용 수력 발전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비철금속 시장의 공급 불확실성 가중

- 인도네시아는 올해 말까지 구리・철・아연・납 등 주요 광물에 대해 최고 1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내년 1월 이후 일부 품목 관세를 추가 인상할 예정

Ⅲ. 지정학적·정치적 불안과 맞물려 기후발 물가 위험 가중

□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 및 전쟁 격화로 글로벌 식량 불안 증대

○ 흑해곡물협정은 22.7월 UN과 튀르키예의 중재 하에 러시아의 식량・비료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곡물 수송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합의한 협정

- 체결 후 약 1년 동안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총 3,290만톤 수출되며 식량난 안정에 기여

○ 러시아는 자국 농산물 및 비료 수출 보장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7.18일부로 흑해곡물협정의 연장 거부를 선언해 서방을 압박

- 협정 중단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항인 오데사와 대체 수출 경로인 다뉴브강 인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며 곡물 수출을 위협

□ 식량민족주의 등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도 확대될 가능성

○ 자국 소비가 우선시되는 식량자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식량 공급 불안 확대 시 주요 농업국들의 수출 관세 부과, 수출 제한 조치 등 식량민족주의 강화 우려

○ 세계 1위 쌀 수출국 인도(전 세계 쌀 수출 중 40% 차지)는 극단적 기후로 인한 공급량 감소 및 쌀값 상승 우려로 7.20일부터 쌀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

-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는 내수시장 공급불안 완화를 위해 자국산 팜유 수출을 제한

○ 러시아 또한 서방과의 갈등 심화 속 자국산 식량자원을 무기화할 가능성 상존

- 밀의 경우 세계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전체 밀 시장의 19% 차지)의 공급에 크게 의존

Ⅳ. 엘니뇨의 기후 리스크가 국제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

□ 기후 피해로 인한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가 물가 둔화 속도를 지연

○ 기상이변의 파급효과는 곡물뿐 아니라 가공식품·에너지·산업용 광물 등 원자재 시장 전반에 광범위한 수급 불안을 야기하며, 이는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와 직결

- 작년 하반기 이후 둔화세를 이어가던 주요국 생산자물가의 상방 위험이 증가

○ 생산자의 비용 상승은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또한 최근 반등세를 보인 국제유가의 상방 압력이 확대될 경우, 그간 물가 둔화세를 견인해오던 기저효과의 소멸이 앞당겨지며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재상승세 가속화

○ 지정학적·정치적 불안이 부각된 상황에서 향후 엘니뇨 심화 시 악영향 증폭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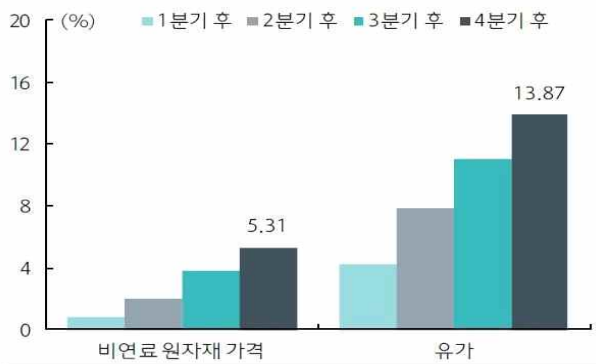
□ 글로벌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 달성 지연에 따른 긴축 기조 장기화에 유의

○ 기후 리스크가 중장기적 물가 위험 요인으로 잔존함에 따라,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고금리 유지 기간이 장기화될 소지

○ 특히, 고용시장 수급이 타이트한 미국 등의 경우 식품 및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임금·서비스 물가를 비롯해 경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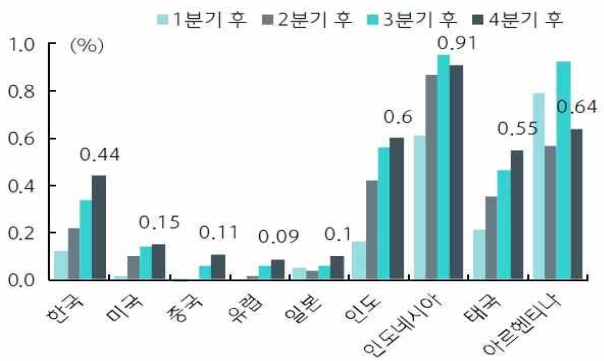
- 목표 수준을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 불안 및 근로자의 임금상승 요구가 이어지면서 임금-물가 간 상호작용(wage-price spiral)이 발생할 우려

그림13 | 엘니뇨 발생 시 원자재의 가격 상승 효과



자료 : Cashin et al(2015), IMF

그림14 | 엘니뇨 발생 시 국가별 인플레이션 상승 효과



자료 : Cashin et al(2015), IMF

4. 기초연금 제도 및 수급자 특성 변화 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23.9)-

□ 기초연금제도 개요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수급률을 7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매년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제외한 수급자 수가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되도록 대상자의 월 선정기준액을 설정

○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수급할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인 기준연금액은 월 323,180원

- 부부 동시 수급자(이하 '부부2인'), 국민연금 급여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사람, 소득인정액과 부부 기초연금액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 등의 경우 기준연금액에서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표 1] 기초연금 제도 개요

수급가구	주요 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제외	
급여액	2023년 기준 최대 급여액(기준연금액)은 월 323,180원	
급여 감액제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A급여[1]액과 국민연금 수급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부부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직역연금 특례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중 종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 사람과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 중 65세 도달 당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50%(부가연금액)를 최대 급여액으로 설정하고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주: 1) A급여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인 A값에 가입자별 지급률과 가입기간을 반영하여 산출한 값
자료: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기초연금 재정소요는 국비와 지방비 합산 기준으로 2014년 6.8조원에서 2023년 22.6조원으로 연평균 14.2% 증가

- 동 기간 국비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15.3%)은 지방비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10.1%)을 상회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기초연금 총 지출액의 40~90%를 부담하고 있고, 재정자주도가 50% 미만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4~6%를 추가 부담

[그림 1] 기초연금 재정소요: 2014~2023년

(단위: 조원)



주: 재도운영비를 제외한 수치이며 2014년부터 2022년은 결산 기준, 2023년은 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기초연금 수급자 수 분포

○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435.3만명에서 2022년 623.9만명으로 지속 증가

-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단독・부부1인・부부2인의 가구 유형별 수급자는 모두 증가하였으나, 부부2인 유형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초연금 수급자 중 부부2인에 속하는 사람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유배우자 인구 비중의 증가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유배우자 노인 인구 비중의 증가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전체 수급자 중 전액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91.4%에서 2022년 89.4%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수준 개선 및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비중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됨

○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사람의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사람의 비중도 최근 증가 추세

-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비중이 지속 증가(2014년 30.4% → 2022년 46.6%)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제도 성숙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에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것과 관련
- 생계급여 동시 수급자 비중은 2020년까지 지속 감소하다가 2021년부터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생계급여에서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데 따른 결과로 보임

□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수준 변화

○ 기초연금의 단독 및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0.2%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1·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액의 연평균 증가율(각각 3.6%, 3.3%)보다 높은 수준

-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소득 및 자산의 증가 속도가 타 복지급여 수급자들보다 더 빠름을 의미
  -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등이 제외되므로, 주요 공공부조 급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소득 및 자산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2015년 21만원에서 2022년 50만원으로 연평균 13.2% 증가하였고, 소득인정액이 0원인 사람 수는 지속 감소

-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하위 소득자들의 소득 개선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남

○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5분위별로 전체 수급자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특히 소득인정액 2분위에서 그 증가폭이 두드러짐

- 소득인정액 2분위에서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8%에서 2022년 41.3%로 증가
  - 이는 국민연금 수급이 기존 고소득자들에 집중되었으나, 제도가 성숙하면서 점차 하위 소득자들에게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기초연금 급여액의 변화

○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4년 월 20만원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다가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이 되었고,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설정된 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 중

- 기준연금액을 2021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 전, 2019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소득하위 20% 이하와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에 30만원을 선(先) 적용
-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 수준은 국민연금 A값의 10% 수준으로 설정되었는데, 이후 2018년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할 당시 기준연금액은 국민연금 A값의 11% 수준이 되었고, 2021년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당시에는 그 수준이 11.8%로 증가

[표 5]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추이

(단위: 원, %)

적용기간	'14.7~'15.3	'15.4~'16.3	'16.4~'17.3	'17.4~'18.3	'18.4~'18.8	'18.9~'19.3	'19.4~'19.12	'20.1~'20.12	'21.1~'21.12	'22.1~'22.12	'23.1~'23.12
기준연금액	200,000	202,600	204,010	206,050	209,960	250,000	253,750 (300,000)	254,760 (300,000)	300,000	307,500	323,180
(A값 대비)	(10.1)	(9.9)	(9.7)	(9.5)	(9.2)	(11.0)	(10.8)	(10.4)	(11.8)	(11.5)	(11.3)

주: 2019년 4월부터 2019년 12월에 대한 괄호 안 수치는 소득하위 20% 이하에 대한 기준연금액, 2020년의 괄호 안 수치는 소득하위 40% 이하에 대한 기준연금액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4) 국민연금 A값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가리킴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년 미만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격차는 지속 감소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018년 25만원으로,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과의 격차가 예년보다 크게 축소됨
  - 2018년과 2021년 외의 기간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기초연금의 증가율이 국민연금 20년 미만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증가율보다 높음을 확인

○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014년 17.8만원에서 2022년 27.2만원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수준은 기준연금액의 89% 수준을 유지

- 다만,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소득하위 20% 이하와 40% 이하에 기준

연금액을 30만원으로 더 높게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비율이 타 연도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의 경우, 감액으로 인해 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이 전체 수급자 평균 수급액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2022년 기준 월 34.3만원으로 나타남 (전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 대비 58.5%)

□ 시사점

○ 장기적으로 노인인구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소득·재산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제도의 효과성과 재정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수급범위 검토 필요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현행 제도의 대상 범위(노인 인구의 70%)를 유지할 경우 경제적 여건 측면에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들에게 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적절한 대상자 선정 방식을 검토할 필요

○ 국민연금 평균수급액 대비 기준연금액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내에서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역할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급여를 설정할 필요

-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고,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급여가 감액됨
-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급액과 기초연금 수급액의 차이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급여액과 유사한 수준의 기초연금 급여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국민연금의 제도 성숙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민연금의 성숙 및 개혁 방향에 따라

기초연금 제도를 조정할 필요

- 향후 국민연금의 제도 성숙에 따라 대상의 포괄성과 급여 수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내에서의 기초연금의 역할 재정립 필요
  - 향후 국민연금의 대상 포괄성과 급여 수준이 모두 확대되면 기초연금은 높지 않은 수준의 보편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반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유지되는 경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효과성 제고와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향후 국민연금을 개혁할 경우,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따라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기능을 강화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반대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역할을 강화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여 소득재분배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따라 기초연금의 제도 추진 방향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

5. 대학원 R&D 투자의 해외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교육개발원(2023. 9.)-

Ⅰ. 들어가는 말

○ COVID-19 확산, 국가 간 무역 갈등, 기후변화, 인구 지형 변화 등 불확실성 증대를 전제하는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 자원 개발과 핵심 인재 영입·보호에 주력함.

○ 우리나라 역시 추격형에서 벗어나 선도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까지 약 160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적극적 대응을 추진해왔으나 디지털 전환과 인구감소가 유발한 인재의 질적·양적 부족에 대한 대응이 너무도 시급한 상황임.

○ 대학원의 R&D 활동은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식의 생산은 물론 높은 수준의 핵심 인재를 발굴-육성-배출-활용하는 체계를 통해 국가의 미래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가 성장을 주도할 혁신 인재 수급 체제이자 미래 가치 창출의 공동 기획자인 대학원 R&D 투자의 해외 동향을 살펴보고 대학원 R&D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Ⅱ. 대학원과 R&D

가. 대학원 R&D의 개념

○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이하 R&D)이란 인간, 문화, 사회의 지식을 비롯한 지식을 증강하기 위한 창조적인 일이자 새로운 응용물을 고안하기 위한 지식의 이용을 의미하며, 주로 기초연구(basic research), 응용연구(applied research), 실험개발(experimental development) 등을 통해 이루어짐. 이러한 R&D는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HRD), 연수지원 등 6대 영역으로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음.

○ 대학원이 수행하는 R&D는 국가 R&D 활동 증진을 위해 대학이 연구수행

주체가 되어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업 등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음.

나. 대학원 R&D의 기능 변화

○ 대학원 R&D의 기능과 역할은 국가 R&D의 시대별 변화와 특징 속에서 함께 이루어졌음.

〈표 1〉 국가 R&D의 시대별 특징과 변화

구분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 ~ 현재
특징	선진기술 도입·개량	선진국 추격형	선진국 추격형	창조형 전환 도모	탈추격형 글로벌 기술선도
성격	산업현장 애로기술 지원	수출주력 산업 기술개발	첨단산업 기술개발	기초·원천 기술개발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개발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9); 재인용 문미성·김군수(2011), p. 1.; 성지은(2013), p. 204.; 전자신문(2021.1.24.) 참조.

다. 국가 R&D와 대학원 R&D

○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지원(중앙정부와 지자체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산은 약 15.5조 원(2020년 결산 기준)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R&D 예산은 약 93.1조 원(2020년 결산 기준)이었음. 두 부처에서 공통으로 수행된 일반지원 대학(대학원 포함) R&D 지원 예산(대학의 기초, 응용, 개발 연구에 대한 총합)은 약 8.4조 원임(서영인 외, 2022:4).



[그림 1] 국가 R&D 예산의 규모와 구성

라. 우리나라 대학원 R&D의 국제적 위상

○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대학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캐나다(41.2%)가 가장 높았고, 에스토니아(33.6%), 핀란드(24.6%), 이탈리아(23.7%), 영국(23.5%), 프랑스(20.2%), 독일(18.2%), 일본(11.7%), 미국(11.3%), 우리나라(9.0%) 순이었음.

○ 우리나라의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대학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주요국 중 가장 낮았음. 일본과 미국은 다른 상위 국가보다 상대적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국가와 대학 연구개발비의 절대적 규모가 큰 국가임을 고려해야 함.

Ⅲ. 해외 사례

○ 세계 주요국은 고등교육기관을 국가 R&D의 주요 구성 요소이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인으로 판단하여 대학과 대학원이 수행하는 R&D에 대한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대하고 있음.

○ 특히 대학원은 핵심 학문 분야에 대한 석·박사, 박사후연구원 등의 연구 수행 인력이 집중되어 있어 기초연구뿐 아니라 응용연구, 개발 등에 기여하고 정부, 기업,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R&D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가. 미국

○ 미국의 대학원은 국가 R&D의 주요 구성 요소이자 경제성장 동인임(Council of Graduate Schools, 2007:4). 또한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공공재(public good)로서 국가 차원(nationally)과 주 정부, 지방정부 차원(state & local levels)에서 R&D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미국의 국가 전체 R&D 투자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6,230억 달러(약 821조 원)로 전체 GDP 대비 3.39%였음(NCSES, 2022:5). 이 중 고등교육기관이 수행하는 R&D 투자 규모는 약 714억 달러(약 94조 원)으로 전체의 11.5%였음.

○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은 기초연구에서 전체 중 47.2%를 차지하였고 기업의 비중(32.1%)보다 컸으며, 응용연구에서 16.2%를 차지하여 기업의 비중(58.1%) 다음이었음.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이 응용연구와 개발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 분야에서 가장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

〈표 3〉 미국 전체 R&D 수행 주체별·영역별 재정 현황(2020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전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연방정부	11,085	11.7	18,971	15.5	27,741	6.8	57,797	9.3
비연방정부	115	0.1	463	0.4	35	-	613	0.1
기업	30,517	32.1	71,279	58.1	366,268	90.4	468,063	75.1
고등교육기관	44,817	47.2	19,904	16.2	6,651	1.6	71,371	11.5
비영리조직	8,404	8.9	12,156	9.9	4,547	1.1	25,107	4.0
전체	94,938	100.0	122,772	100.0	405,241	100.0	622,951	100.0

자료: 서영인 외(2022). p.147. 참조.

○ 주정부별 고등교육기관 R&D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텍사스주, 펜실베이니아주, 메릴랜드주, 매사추세츠주 등의 6개 주정부가 미국 전체 고등교육기관 R&D 투자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44.7%를 차지했음. 이들 주정부에 대한 고등교육기관 R&D 투자는 연방정부가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었음.

○ 주정부별 고등교육기관 R&D 투자 현황과 R&D 투자금액 상위 20개 대학의 위치를 나타내면 [그림 2]와 같음. 이를 통해 전체 고등교육기관 R&D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에 R&D 투자 상위 20개 대학이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 주별 고등교육기관 R&D 투자 현황과 R&D 투자금액 상위 20개 대학

자료: 서영인 외(2022). p.153. 참조.

나. 일본

○ 일본의 대학원은 중앙정부 중심 국가 R&D 체제 속에서 국가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주요 대상이 되었음. 2022년 1월, 「일본의 대학 연구력 강화 정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대학 실현을 위한 대학 펀드 설립((가칭) 국제 우수 연구대학 제도), 지역 핵심 특색 있는 연구대학 종합 패키지, 대학의 강점 및 특색 강화, 다양한 연구대학군 형성 정책 추진 등을 제시함.

○ 일본의 국가 전체 R&D 투자 규모는 2020년 기준, 29조 3,465억 엔(약 183조 원)으로 전체 GDP 대비 3.59%였고, 국가 전체 R&D 투자 중 대학은 3조 6,760억 엔(약 35조 원)으로 전체의 19.1%를 차지하였으며, 기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음

○ 자연과학 영역에서 대학은 기초연구의 48.8%를 담당하여 기업의 비중(38.1%)보다 컸음. 대학은 응용연구에서도 24.5%를 차지하여 기업(60.4%)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일본의 대학은 기초연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응용연구도 일정 부분의 투자를 시행하고 있었음.

〈표 5〉 일본 전체 R&D 수행 주체별·영역별 재정 현황(2020년 기준)

(단위: 억 엔, %)

구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전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기업	10,192	38.1	22,027	60.4	105,946	91.9	138,166	77.5
비영리단체·공공기관	3,501	13.1	5,508	15.1	7,110	6.2	16,119	9.0
대학	13,074	48.8	8,921	24.5	2,113	1.9	24,108	13.5
전체	26,767	100	36,456	100	114,169	100	178,393	100.0

자료: 서영인 외(2022). p.175. 참조.

○ 문부과학성의 대표적인 R&D 투자인 과학연구비는 일본 대학원 R&D의 지역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국립대학과 주요 명문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배분되고 있었음. 과학연구비 수혜 상위 30개 대학의 배분 금액은 전체 배분 금액의 56%에 달했음. 국립 도쿄대학이 총 4,202건에 대하여 225억 엔(약 2,140억 원)을 배분받아 전체 중 10.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많은 국립대학이 상위 순위에 포진해 있었음.

다. 각국의 대학원 R&D의 특징

○ 첫째, 국가별 대학원 R&D 투자 규모가 컸고, 대학원 R&D를 지속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추진했음. 둘째, 국가별 대학원 R&D는 이공계와 비이공계 간의 균형적인 투자를 추진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음. 셋째, 모두 지방정부 차원의 대학원 R&D 투자와 대학원 연구 활성화를 지원했음. 넷째, 대학원 R&D의 핵심 구성 요소인 석·박사 과정생, 졸업생, 박사후연구원 등의 연구개발인력 처우 개선과 진로 개발, R&D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었음. 다섯째,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R&D 연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대학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음.

Ⅳ. 해외 사례

○ 국가 차원에서 대학원 R&D의 역할을 강조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함.

- 모두 대학원을 둘러싼 환경과 거버넌스, 대학원 R&D 투자 규모 역시 달랐으나 공통으로 국가 R&D 투자 내에서 대학원 R&D 투자 규모가 컸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였음.
-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에서 대학이 골고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대학원 R&D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공계와 비이공계 대학원 R&D 투자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함.

- 모두 이공계와 비이공계 R&D 투자 규모의 차이는 존재했지만 두 계열 모두 투자 규모의 감소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음. 특히 지역을 중심축으로 지역경제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대학원이 담당하는 R&D에 대해 이공계와 비이공계의 구분 없이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음.
- 균형적인 고등교육기관의 연구환경은 이공계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며, R&D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이공계의 연구성과 역시 필요함.

○ 대학원-지역사회-산업계 등이 연계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대학원이 지역사회 산업 분야를 연구하거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혁신 클러스터와

같은 연계 협력 환경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었음.

○ 대학원 R&D를 담당하는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경력경로 개발 등을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함.

- 모두 대학원 R&D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고 연구개발인력의 처우와 노동환경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임에도 연구개발인력의 정체성 문제는 해결 방안이 확실치 않은 현실임.
- 우리나라 역시 연구개발인력의 처우와 같은 공통적인 문제 해결에 정책적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인력에 관련된 통계 데이터 수집 문제를 개선하여 대학원 R&D 정책과 재정지원 시 객관적·일관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1. 경기도, ‘재난현장 자원봉사 쉼터버스’ 도입

–경기도(2023. 9. 8.)–

– SK하이닉스 4억 원 기부로 2033년까지 10년간 운영, 자원봉사자용 버스는 처음

○ 경기도가 각종 재난현장의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버스를 운영한다. 쉼터버스는 SK하이닉스의 기부로 2033년 8월까지 10년간 경기도 재난현장 곳곳을 누비게 된다.

○ 경기도는 8일 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의장과 기부 기관인 SK하이닉스의 이천CPR(대외협력) 부사장,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재난현장 자원봉사 ICT 쉼터버스’ 전달식을 가졌다.

○ SK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 감염병, 수해복구 등 재난현장에 봉사자 등을 위한 휴식공간이 부족한 것에 착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4억 원을 기탁했고 최종적으로 쉼터버스를 경기도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 기존에도 재난 현장의 소방관 등을 위한 쉼터버스는 운영되고 있었으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쉼터버스 도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 이번에 제작된 쉼터버스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휴식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다양한 기능이 설치됐다.

○ 차량 내 종합상황실에는 재난상황실과 직접 소통을 위한 화상회의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스마트 안전 시스템과 연계해 자원봉사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활동 시 손목에 스마트 밴드를 착용해 심박수, 체온, 쓰러짐 여부 등이 실시간으로 측정된다.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쉼터버스로 이동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차량 내부의 휴식칸은 우등좌석 12석을 비롯해 긴의자 4개가 설치돼 있으며, 휴식 시 명상 등 심신안정을 위한 가상현실(VR) 체험기기를 비롯해 공기청정기, 물 분사기, 외부 차양막 등이 설치돼 봉사자들의 편안한 휴식을 돕는다.

○ 이날 직접 버스에 시승한 김동연 지사는 “재난 현장에서마다 경기도의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애를 써주셨는데 이분들을 위한 쉼터버스를 기부를 통해 운영하게 돼 감사드린다”며 “쉼터버스를 통해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재난현장에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를 나눔과 포용, 상생이 함께하는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커다란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염종현 의장은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자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자원봉사 쉼터버스라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보다 더 발전시켜서 많은 쉼터버스가 경기도 곳곳을 누비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주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 SK하이닉스 이천CPR(대외협력) 부사장은 “대부분의 기부가 수혜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반면, 이번 기부는 수혜자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쉼터버스를 통해 봉사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버스가 가치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원봉사 쉼터버스는 이날 전달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재난 시에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쉼터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상시에도 농촌 일손돕기, 취약계층 지원 등 자원봉사 현장과 혹서기·혹한기 도민을 위한 이동쉼터로 활용하는 등 도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2. 전남도, 전국 최초로 청년층에 신축아파트 만원에 공급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해 2천 800억 투입, 1천 호 건립-

-전라남도(2023. 9. 6.)-

○ 전라남도는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남의 총인구수는 7월 말 현재 181만 71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 중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인구 감소가 두드려진다. 지난 5년간 전남의 청년인구는 6만 7천314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고흥군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다.

○ 이에 전남도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과 관리조직 운영 등 총 2천893억 원 규모의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했다. 사업비는 도비, 광역소멸기금으로 활용된다.

○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 전남도는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만원아파트가 전용면적이 협소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대폭 개선했으며,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평면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 또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초 거주기간을 기존 공공임대아파트(2년)보다 더 긴 4년으로 늘렸다.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은 절감된 주거비를 모아 자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 ‘전남형 만원주택’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2035년까지 1년에 100~200호씩 순차적으로 균형 있게 건립된다.

○ 전남도는 이를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청년주택사업 지원 근거, 입주자격·기간,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전남도는 속도감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전남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 또한 월 1만 원의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운영비 재원을 별도 마련하기 위한 기금도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 원에 추가로 150억 원을 출연, 총 680억 원 규모의 가칭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할 계획이다.

○ 기금이 조성되면 전남형 만원주택 운영에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 청년층의 임대료 상승 걱정이 덜어질 전망이다.

○ 전남형 만원주택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2024년 상반기까지 전남개발공사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매년 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돕는다.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서비스와 주택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도민의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는 ▲예방(대상자 발굴) ▲보편성(도민 누구나) ▲접근성(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 ▲전문성(전문가의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주거 문제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도민이 없도록 맞춤형, 생활밀착형 주거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전남도지사는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시군에서 국토부의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반값주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 ‘만원주택’을 시행하면서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도 차원의 ‘전남형 만원주택 1천호 사업’을 1단계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3. 충남 전역 ‘빛 공해 관리’ 나선다

–충청남도(2023. 8. 31.)–

- 내달 1일자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내년 9월 1일 시행 -

○ 충청남도는 다음 달 1일자로 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내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한 환경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해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 지정 대상은 옥외 인공조명으로 △도로, 보행자길, 공원녹지 등의 공간조명 △옥외 광고물 내 설치 조명, 옥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 기구 및 부속 장치 등 광고조명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교량 등 장식조명이다.

○ 지정 위치 및 면적은 해수면 일부를 포함한 도내 용도지역 지정 8821.1㎢이다.

○ 다만 육도와 월도, 삽시도, 대난지도 등 비연륙도서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12.7㎢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도는 용도지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1~4종으로 구분한다.

○ 제1종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등이다.

○ 제2종은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며, 제3종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설정했다.

○ 근린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은 제4종으로 잡았다.

○ 서천갯벌(습지보호지역)은 공유수면으로 용도지역 구분이 없으나 제1종으로 관리하고,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의 미세분 지역 역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보고 제1종으로 관리키로 했다.

○ 지정 종별 빛 방사 허용 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빛방사허용기준’을 따른다.

○ 이번 지정·고시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도내에 설치하는 옥외 인공조명은 관리구역별 빛 방사 허용기준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 내년 시행 이전 설치한 옥외 인공조명은 유예기간(3년) 이내 빛 방사 허용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해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충청남도 기후환경국장은 “그동안 과도한 빛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도적 기반이 없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4.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 추진
- 최대 1천만 원 6개월간 무이자 대출 시행으로 자금난 완화

-강원특별자치도(2023. 8. 29.)-

○ 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28일부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강원영서 기준으로 2000년대 들어 4번째로 많은 폭염일수를 나타낸 금년 여름,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전기 사용량이 전년보다 약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겹치면서 여름철 전기요금이 본격적으로 청구되는 이달 말부터 전기요금 부담이 폭증할 것에 대비한 조치이다.

- 가장 더운 7.15.~8.15. 사이의 전기요금 청구 시기가 8월말부터 본격화되면 사업체의 전기요금 납부 시기가 추석대목과 맞물리게 되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 이 사업은 도내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강원특별자치도는 6개월 거치 1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면서 거치기간인 6개월 동안의 이자와 보증료 또한 지원할 방침이다.

• 단, 난방비 대출을 받은 업체는 냉방비 대출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은 소액 단기 대출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체도 신청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이번 사업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도내 영업점을 한 번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냉방비 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추석명절 대목을 앞두고 여름철 전기요금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 개업일과 사업자 등록일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소상공인·중소기업
- 법인의 경우 대표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본사의 주소가 강원도 내

○ 신청기간 : 2023. 8. 28.(월) ~ 예산소진 시까지

○ 대출자금액 :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 기존 난방비 대출 받은 업체는 냉방비 자금을 포함하여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
- 단, 산불피해지원(4.19.~5.31.)기간 난방비 자금을 받은 강릉 업체는 난방비 자금을 포함하여 1천 5백만원 범위내에서 가능

○ 대출기간 :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 지원내용 : 거치기간(6개월) 동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

○ 대출조건 : 보증요율 연0.8%

○ 취급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각 도내 영업점(54개소)

○ 신청방법 : 취급은행에 신청 서류 제출

5.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공부방 운영
- 도내 학생과 학부모면 누구든, 어디서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

-제주특별자치도(2023. 9. 5.)-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도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공부방 시스템(https://jjsdlon.or.kr)을 5일부터 제공한다.

○ 제주도는 지난 8월 31일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공부방 시스템 구축을 마쳤으며, 시험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에 나섰다.

-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공부방 시스템은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고유의 오프라인 컨설팅 기법을 온라인에서 구현해 전국 최초로 독자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공부방은 총 3개 영역(학습준비, 학습관리, 학습전략)·9개 주제로 구성됐으며, 학습과정은 영상자료를 통한 교육 내용 이해, 설문이나 점검표를 통한 현재 상태 점검, 활동지를 통한 스스로 학습 순으로 진행된다.

- 온라인 공부방을 통해 언제든지 반복학습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질문과 답변을 통하거나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대면 컨설팅도 가능하다.
- 학습준비 영역은 나의 학습유형 알기, 자기주도 학습 이해 2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온라인 설문으로 학습동기와 학습습관을 파악하고 교육영상을 통해 스스로 개선 노력을 진행한 후 주기적 설문 등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동기와 습관의 형성을 통한 긍정적 변화를 유도한다.
- 학습관리 영역은 시간관리, 목표관리, 수업관리, 시험관리 4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 시간 단위까지 학습플래너 작성 및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관리, 단기-중기-장기 목표 설정방법의 습득을 통한 목표관리, 수업 전후를 활용한 예습 및 복습 습관 형성을 위한 수업관리, 심리적 불안 개선

및 오답노트 작성과 반복 점검을 통한 오답 습관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시험관리 과정 등 각 주제의 반복 학습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비약적 향상을 유도한다.

- 학습전략 영역은 읽기, 쓰기, 기억전략 3개 주제로 이뤄졌으며, 실제 학습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읽기, 쓰기, 기억을 위한 각종 기법을 소개하고 반복학습을 통한 개선을 유도한다.
-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공부방 시스템에서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운영 커리어넷 사이트와 연동 운영되는 온라인 진로컨설팅도 이용할 수 있다.

○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주도로 도내 학생들이 시간·장소 제한 없이 편리하게 온라인 자기주도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지속적 기능 개선을 통해 도내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없애고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자기주도적 인재양성을 위한 요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Ⅷ.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사례

Ⅷ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사례

1. 「국고금 관리법」상 관서운영비 지출한도 위반 문제

–국회예산정책처 국토교통위원회(2022년 결산 분석/2023. 7.)–

□ 현황

○ 국토교통부 예산에 편성된 운영비(210목)는 본부의 기본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비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국토교통부의 본부 기본경비 사업과 기타 사업에 포함된 운영비 예산현액은 1조 2,588억 9,600만원이며, 국토교통부는 이 중에서 1조 2,216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운영비(210목)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운영비	1,253,545	1,251,840	35,123	42,179	1,258,896	1,221,662	5,240	31,995	1,153,920

○ 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식비, 특근매식비, 임차료, 유류비, 일반용역비, 기타운영비 등이 포함되며, 운영비는 각 관서에서 지출관의 검토를 거쳐 집행되거나 관서운영경비로 집행된다. 관서운영경비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관서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국고금 관리법」은 일반적인 국고금 지출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간략한 지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관서운영경비는 상대적으로 지출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일선 부서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있어 여러 제한을 두고 있다.

□ 분석의견

○ **국토교통부는 2022회계연도 운영비 집행 시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지출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집행은 일반적으로 「국고금 관리법」제22조에 따라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 서류를 검토하여 지출관이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해당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인 관서운영경비에 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제24조에서 예외적으로 간략한 지출 절차를 규정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 및 기획재정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제20조제1항 제3항 등은 운영비(210목)는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이 건당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처럼 관서운영경비 중 운영비의 지출한도를 건당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지출관의 승인 없는 지출을 최소화하여 관서운영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는 관서운영경비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고금 지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 그런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의 경우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역협력회의를 위하여 관련 집기를 설치 혹은 대여하기 위하여 운영비(일반수용비 210-01) 535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1회에 집행하였다. 이는 운영비(210목)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이 건당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2022회계연도 건당 500만원 초과 관서운영경비 집행 현황]

(단위: 원)

구분	세부사업명	집행일	비목	지급액	지급업체	지급용도
국토 정책관	본부기본경비 (비총액)	2022. 12.1.	일반수용비(210-01)	5,350,0 00	○○○○ 플랫폼	국토부-부울경 지역 협력회의 관련 탁상 기등 설치및대여료

자료: 2022회계연도 국토교통부 관서운영경비 지급대장 및 지출부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향후 관서운영경비의 집행에 있어 「국고금 관리법」등이 규정한 지출한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수소차 보급 사업 전 차종 집행 부진 문제 개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환경노동위원회(2022년 결산 분석/2023. 7.)–

□ 현황

○ 수소차 보급 사업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수소승용차, 수소버스, 수소화물차, 수소청소차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 수소차 구매보조금은 정액으로 지원되며, 지원금액 단가는 수소승용차 2,250만원, 수소버스 저상 1억 5,000만원, 고상 2억원, 화물차 2억 5,000만원, 청소차 7억 2,000만원이다.

○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현액 6,677억 6,900만원의 72.4%인 4,834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842억 7,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수소차 보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892,769	667,769	667,769	483,486	72.4	9	184,274	822,950
수소차 보급	679,505	454,505	454,505	288,813	63.5	-	165,693	633,400

□ 분석의견

○ **수소승용차, 버스, 화물차, 청소차 등 전 지원 차종의 보급 실적이 부진하므로, 환경부는 차량 출시일정, 소비자 구매수요,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집행가능한 물량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 환경부는 2022년도에 수소승용차 2만 7,650대, 버스 340대, 화물차 6대, 청소차 4대 보급을 위해 본예산 6,79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제2회 추경에서 구매수요 저조 및 반도체 수급문제 등으로 인한 생산 지연 등을 고려해 수소승용차 10,000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예산을 4,545억 50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 각 지원 차종별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회계연도 수소차 보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본예산	추경(a)	교부	실집행(b)	실집행률(b/a)
수소승용차	622,125	397,125	244,823	226,489	57.0
수소버스	53,000	53,000	37,700	17,008	32.1
수소화물차	1,500	1,500	1,250	250	16.7
수소청소차	2,880	2,880	5,040	0	0.0
소계	679,505	454,505	288,813	243,748	53.5

주1. 실집행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현액 중 지자체가 실집행한 금액이다.
주2. 실집행률을 추경금액 대비 산출한 것은, 환경부가 제2회 추경에서 2022년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규모를 조정한 것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자료: 환경부

- 먼저, 수소승용차의 경우 본예산으로 6,22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경에서 3,971억원(△2,250억원)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지자체에는 추경예산의 61.6%에 해당하는 2,448억 2,300만원만 교부하였다. 지자체 실집행금액은 2,264억 8,900만원에 해당하였는데, 이는 추경예산 대비 57.0%에 불과한 실적이다.
- 수소버스의 경우 본예산 530억원 중 71.1%에 해당하는 377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였고, 지자체 실집행금액은 170억원(실집행률 32.1%)에 해당하였다.
- 수소화물차의 경우 본예산 15억원 중 12억 5,00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였으나, 2억 5,000만원(실집행률 16.7%)만 실집행되었다.
- 수소청소차의 경우 본예산은 28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보급물량을 상향하여 지자체에 50억 4,0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지자체 실집행액은 0에 해당하였다.
- 한편, 보급물량을 기준으로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소승용차의 경우 당초 본예산 보급계획 목표는 2만 7,650대였으나, 추경 및 전년 이월물량 등을 고려해 총 보급계획 물량이 1만 7,941대로 조정되었고, 그 중 56.3%에 해당하는 10,104대가 보급되었다.
- 수소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300대 및 광역버스 40대 등 2022년 보급계획 물량에 전년 이월물량을 포함하여 총보급계획 물량이 429대에

해당되었는데, 실제 보급지원 물량은 35.4%에 해당하는 152대에 불과하였다.

- 이 외에 수소화물차 6대 및 수소청소차 4대 등으로 10대 보급을 계획하였으나, 동 차종 관련하여서는 보급실적이 전무하다.

[2022회계연도 수소차 보급 사업 물량 보급 내역]

(단위: 대, %)

차종	보급계획 물량	전년이월 물량	추경증가 물량	총 보급계획 물량(A)	실제 보급물량(B)	보급률 (B/A)	다음연도 이월물량
수소승용차	27,650	291	△10,000	17,941	10,104	56.3	247
수소버스	340	89	-	429	152	35.4	82
수소화물차	6	-	-	8	0[1)]	0.0	3
수소청소차	4	-	-	7	0	0.0	7

주. 실제 보급물량은 신규차량 등록기준
주: 1) 수소화물차의 경우 2022년에 1대가 집행(250백만원)되었으나, 2023년도에 신규차량으로 등록될 예정으로 보급물량은 0으로 나타났다.
자료: 환경부

- 환경부는 승용·승합·화물 등 각 차종별 단일차종으로 인해 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차량 출시 지연, 지방비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차량 보급 실적이 부진하였다는 설명이다.

[수소차 차량 출시 계획 및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출시여부 (23. 5월말 기준)
버스(고상버스)	22. 7월	23. 4월	O
화물차	22. 4월	22. 11월	O
청소차	22. 12.월	23. 상반기	X

자료: 환경부

- 그런데, 동 사업은 2021년 국회 결산 심사에서 수소차 보급 사업 집행 부진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수소버스의 집행실적이 부진(45.8%)하므로, 실제 수소차 수요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결산 결과 동일한 실집행 부진 문제(수소버스는 집행실적이 36.3%)로 2021년도 대비 하락)가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다.

- 특히, 동 사업은 매년 편성된 예산 대비 지자체에 교부하지 못하고 불용하는 금액 및 지자체 단위의 불용금액이 상당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추경 예산 기준 44.6%에 해당하는 2,027억 5,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 불용액 발생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본예산	추경 (A)	부처불용액 (B)	지자체 불용액 (C)	전체불용액 (D=B+C)	불용비중 (D/A)
2018	3,585	14,835	-	2	2	0.01
2019	97,000	130,408	4,500	1,988	6,488	5.0
2020	254,250	239,250	21,555	80,085	101,640	42.5
2021	365,500	365,500	111,977	59,364	171,341	46.9
2022	679,505	454,505	165,693	37,064	202,757	44.6

자료: 환경부

- 환경부는 이러한 집행 부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수소버스, 화물차 및 청소차의 보급계획 물량을 대폭 상향하였는데, 연례적인 대규모 불용액 금액 발생은 재정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유발하므로, 향후 환경부는 차량 출시 일정, 충전인프라 구축현황, 소비자 구매수요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물량을 편성하고, 불용금액이 대규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3년도 수소차 보급 계획물량]

(단위: 대)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규모
수소승용차	17,650	16,000	△1,650
승합차	340	700	360
화물차	6	100	94
청소차	4	120	116

자료: 환경부

3. 특별교부금 사업과 보통교부금 사업 간 차별화 강화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 교육위원회(2023년 결산 분석/2023. 7.)-

□ 현 황

○ 보통교부금은 시·도교육청별로 총액으로 교부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는 반면,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는 달리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의 현안수요 및 재난지원 등으로 사용용도가 정해지는 교부금이다.

○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 20.79%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①국가시책 특별교부금, ②지역현안 특별교부금, ③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세분되는데, 재원규모는 각 유형별로 특별교부금 총액의 60%, 30%, 10%이다.

○ 2018년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이 축소(4%→3%)되면서 특별교부금 규모는 2017년 1조 7,826억원에서 1조 5,029억원 규모로 15.6%(2,797억원) 감소하였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규모에 연동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내국세가 증가하면서 2022년에는 2조 3,532억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최종 예산액: 2017~2022]

(단위 :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65,910	524,528	605,305	535,431	603,371	812,976
보통교부금		448,084	509,499	588,011	520,434	586,217	788,644
특별교부금		17,826	15,029	17,294	14,997	17,154	23,532
	국가시책	10,696	9,018	10,376	8,998	10,292	14,119
	지역현안	5,348	4,508	5,189	4,499	5,146	7,060
	재난안전관리	1,783	1,503	1,729	1,500	1,715	2,353

주: 세계잉여금 및 정산분을 합한 최종액 기준
자료: 교육부

□ 분석의견

○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보통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으므로 사업 간 차별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①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교육부 각 실·국에서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교육부 내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확정·통지하는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2022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조 4,119억 2,200만원은 5개 정책사업, 20개 단위사업, 87개 세부사업으로 교부되었다.

[2022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단위: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교부액
[1]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1-1]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45,094
	[1-2] 혁신교육 확산 지원	14,977
	[1-3] 중학교 자유학년(학기)제 지원	20,661
	[1-4] 창의융합교육 기반 마련 및 활성화	181,393
	[1-5]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지원	18,353
	[1-6] 교과서 활용 및 교수학습 평가 지원	9,399
	[1-7] 미래와 만나는 ICT 연계교육	12,601
	[1-8]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및 임용연수체제 개선	14,240
	[1-9] 민주시민 및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12,040
[2]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2-10] 교육복지 지원 강화	149,112
	[2-11]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지원	521,606
	[2-1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지원	6,572
	[2-13] 유아교육 역량강화	7,346
	[2-14] 특수교육 지원강화	16,738
[3] 안전한 학교 구현	[3-15] 학생건강 및 안전	38,138
	[3-16]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8,161
[4] 진로·직업교육 책임강화	[4-17] 중등 직업교육 혁신 지원	276,315
	[4-18]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10,582
[5] 교육행정지원	[5-19]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지원	28,902
	[5-20] 지방교육 행·재정 지원	66,669
합 계		1,411,922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 교육부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2-10] 교육복지 지원 강화)으로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을 지원(2020년 1,007억원, 2021년 1,364억 4,200만원, 2022년 1,261억 3,100만원)하였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은 2020년에 신규 도입(교육부 일반회계)되었으며, 재원조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에 근거하여 국가(증액교부금)가 47.5%, 교육청이 47.5%, 일반지자체가 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간 재원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교육청의 부담을 고려하여 5년간 한시적으로 증액교부금 신설을 통하여 일부 국고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 이와 같은 점과 교육청 연도말 보유재원이 2020년 4.0조원, 2021년 6.6조원, 2022년 23.3조원으로 증가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교육청 부담 47.5%는 보통교부금 및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육청 부담 47.5% 중 일부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편성하였다.
- ② 교육부는 2022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7,448억 1,800만원 중 학교교육시설 신 · 증축 및 개선 사업, 학교교육시설 개선 사업 등 학교시설 신 ·증축, 보수 사업에 95.3%를 교부하였다.
- 그러나 “예측가능하고 특별하지 않은 수요”에 해당하는 시설 관련 사업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교육기관 등 시설비”(2022년 6조 3,215억원)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현안특별교부금은 시설항목 위주의 지원을 지양하고 지역의 특별한 수요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지역현안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학교시설 관련 사업	지역 특색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 관련 사업	합계
금액	709,677	5,810	29,331	744,818
(건)	(1,062)	(6)	(18)	(1,086)
금액 비중	95.28	0.78	3.94	100.0

주: 교부통지액 기준(감교부 이전)이므로 최종 교부액과 차이가 있음
자료: 교육부

- 보통교부금뿐만 아니라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도 시설관련 사업이 편성되면서 시설관련 사업은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다. 2022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은 예산현액은 12조 4,415억원 중 8조 6,076억원(69.2%)이 집행되고 나머지 3조 3,919억원은 이월되었으며 4,420억원은 불용되었다.
- ③ 2017. 12. 30.「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2018. 1. 1. 시행) 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은 본래 목적인 재난안전관리보다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소요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2017년 55.1%) 기존 재해복구로만 한정된 용도를 재해예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내진보강을 2034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보통교부금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나, 향후 2029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앞당길 목적으로 특별교부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2018년부터 특별교부금 재해예방 수요를 내진보강에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보통교부금에 편성된 내진보강 수요는 2017~2022년 1조 2,500억원이며,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에 편성된 내진보강 사업은 동기간 5,986원 규모이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2017~2022년]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보통교부금 내진보강 수요[1]	1,500	1,700	2,500	2,500	1,800	2,500	12,50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2]	1,783	1,502	1,730	1,499	1,731	2,426	10,671
- 재해복구	309	7	32	66	-	141	555
- 시·도교육청 인센티브	982	-	-	-	-	-	982
- 내진보강	491	1,495	1,698	350	1,145	807	5,986
- 코로나19 대응	-	-	-	1,083	586	1,477	3,146

주: 1) 교육기관 등 시설비 중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항목으로 수요 산정
2) 2017년은 포항지진 피해 지원으로 재해복구 수요가 많았음
자료: 교육부

- 종합하면,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보통교부금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일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통교부금과 차별화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은 시설확충, 의무지출 등 통상적인 교육수요보다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핵심 역량 제고, 방과후학교 활성화 및 질 제고 등 신규로 발생하고 있는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1.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 및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등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2023. 7.)-

□ 감사배경 및 목적

○ 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022. 7. 1. 취임한 후 교원 인사 담당자를 출장 및 파견 명령 등으로 인사업무에서 배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받지 않고 전직 등의 인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개방형 직위 감사관에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임용하는 것은 청탁의 소지가 있다며 2022. 11. 8.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 이에 감사원은 위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제22조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3. 1. 18. 청구인에게 회신

□ 감사중점 사항

○ 이번 감사원 감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감사관 채용 등 인사업무를 추진하면서 ①감사관 채용의 공정성, ②전보를 위한 출장 및 파견 명령의 적정성, ③전직·전보 제한 대상자 제한 해제의 적정성을 갖추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

□ 감사실시 과정

○ 감사원은 2023. 2. 6.부터 같은 해 4. 14.까지 31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

□ 감사결과 처리

○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답변서와 업무 관련자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검토 절차를 거쳐 2023. 7. 20.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

□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

(단위:건, 명)

구분	합계	징계	주의	고발
건수(인원)	7(3)	1(1)	5	1(1)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감사관 채용 면접시험에 부당 개입하여 순위 변경

▪ 광주광역시교육청 ㉮과 인사담당이 감사관(개방형직위) 채용 업무를 하면서 면접시험의 평가 순위 변경을 목적으로 평가위원에게 면접시험 평정표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 평가위원이 면접시험 평정표를 수정하여 순위를 변경함으로써 감사관 채용 시험과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감사관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

○ 전보 목적의 파견·출장 및 전직·전보 제한 해제 등 인사 운영 부적정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청 교원인사 관련자를 교체할 목적으로 ㉮·㉯과장 2명은 장기출장명령으로, ㉮·㉯과 인사팀장 2명은 본청 내 타 부서 장학관과 상호 파견 명령으로 교체함으로써 파견·출장을 전보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하고

- 동일 직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임용예정직위를 지정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음으로써 직무 적합성을 제대로 검토받지 않고 전직·전보하는 등 인사의 공정성 훼손

○ 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감사관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하는 한편, 면접시험에 부당 개입하여 시험 및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혐의로 경찰청장에게 고발하는 등 총 7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고발함